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 의무 이행 및 양성 교육 안내

(2026. 6. 10.(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자리안정국 근로지원부)

1. 개요

-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이하 '상담원')을 의무적으로 선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 및 시행령 제80조

장애인고용법 제75조(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80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후략)

○ 상담원 역할

1. 장애인 직무내용 개선 및 배치 지도
2.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유지를 위한 고충상담 및 처리
3. 직무지도 및 직장 적응지도
4. 작업보조도구, 편의시설 개선 등의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
5. 기타 장애인차별 금지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업무

○ 상담원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재활, 특수교육, 심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상담원 선임 의무 이행 안내(6월~12월 말)

- 선임 의무 대상: ①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②장애인고용장려금 데이터상 전년도 12월 말 장애인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체
- 의무 이행 확인 대상: 선임 현황 미기재, 미자격자 선임, 복수 사업체 동일 상담원 선임, 대표자 선임(대표자는 상담원으로 선임 불가)
- 선임 현황 확인 및 조치 요청
 - ① 선임이 완료된 경우: [별첨1]의 선임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 bojo@kead.or.kr 혹은 (팩스) 050-3470-0808로 회신 바랍니다.
 - ②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속 근로자에 상담원 양성 교육[별첨2]을 안내하시어 이수자를 상담원으로 선임 후 조사표 회신 바랍니다.
 - * 미선임, 미자격자 선임, 복수 사업체 동일 상담원 선임, 대표자 선임
 - ③ 장애인 근로자 20인 미만인 경우: 고용인원 감소로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 증빙자료*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임금 대장(직인 필)
- 최종 미선임: 조사 완료 시점(12월 말)까지 선임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 [별첨3]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별표2] 참조

3. 상담원 양성 교육 과정 안내(상시 운영, [별첨2] 참조)

- 대상: 교육 희망자(사업체 소속 혹은 개인 지원)
- 교육과정(EDI사이버연수원: cyedu.kead.or.kr)
 - ① 온라인교육: '직업생활상담원의 의의 및 역할' 등 총 8시간(16차시)
 - ② 현장실습: 온라인교육 수강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근로자 2명 각 1회 상담 진행 후 상담일지 제출(bojo@kead.or.kr)
 - ③ 온라인시험: 현장실습 과제 제출까지 완료 후 매월 말 온라인 필기시험 응시 가능(이수 기준 60점, 합격 시 자격증 발급)

4. 상담원 관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부(☎031-728-7155)

별첨 1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 현황 조사표(양식)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
 현황
 조사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 락 처	
소 재 지 (본 사 주 소)		장 애 인 근 로 자 수	() 명

상담원 선임현황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비 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고 선임 현황 조사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귀하

※ 장애인근로자 수 20명 미만으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 장애인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2026년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교육 안내(1~12월)

1 교육대상

- 장애인 근로자 2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업무 담당자(필수 선임, 우선교육대상자)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자격증 취득하고 싶은 사업체 직원 우선
(개인자격으로 참여시 상담 가능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만 교육 참여 가능)

2 교육개요

- ① 온라인 교육(1단계)
공단 사이버연수원(cyedu.kead.or.kr) 접속 → 로그인 → 교육신청(사이버)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신규)
- ② 상담실습·과제 제출(2단계)
제출양식: 사이버연수원(cyedu.kead.or.kr) → 공지사항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안내문(최신 양식 활용)
제출방법: 제출양식 작성 후 제출 **bojo@kead.or.kr**
- ③ 온라인 필기시험(3단계) (1, 2단계 수료자에 한해 개별 문자안내)
사이버연수원(cyedu.kead.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진행중인 과정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 ④ 필기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3 교육일정

월	기수	단계	일정
1월	168기	온라인강의 & 과제제출 필기시험	~ 1.20.(화) 1.28.(수) - 1.30.(금)
2월	169기	온라인강의 & 과제제출 필기시험	~ 2.19.(목) 2.25.(수) - 2.27.(금)
3월	170기	온라인강의 & 과제제출 필기시험	~ 3.17.(화) 3.25.(수) - 3.27.(금)
4월	171기	온라인강의 & 과제제출 필기시험	~ 4.21.(화) 4.28.(화) - 4.30.(목)
5월	172기	온라인강의 & 과제제출 필기시험	~ 5.19.(화) 5.27.(수) - 5.29.(금)
6월	173기	온라인강의 & 과제제출 필기시험	~ 6.16.(화) 6.24.(수) - 6.26.(금)
7월	174기	온라인강의 & 과제제출 필기시험	~ 7.21.(화) 7.29.(수) - 7.31.(금)
8월	175기	온라인강의 & 과제제출 필기시험	~ 8.18.(화) 8.26.(수) - 8.28.(금)
9월	176기	온라인강의 & 과제제출 필기시험	~ 9.18.(금) 9.28.(월) - 9.30.(수)
10월	177기	온라인강의 & 과제제출 필기시험	~ 10.20.(화) 10.28.(수) - 10.30.(금)
11월	178기	온라인강의 & 과제제출 필기시험	~ 11.17.(화) 11.25.(수) - 11.27.(금)
12월	179기	온라인강의 & 과제제출 필기시험	~ 12.22.(화) 12.29.(화) - 12.31.(목)

☐ 온라인교육

- Q. 온라인교육은 이미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들어야 하나요?
 - 다시 들을 필요 없이 기존 온라인교육 수료생은 ②**상담실습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 상담실습·과제제출

- Q. 상담일지 양식을 파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Q. 상담 효율성을 위해 **비대면(유선 등)상담 진행도 가능합니다.**
- Q. 상담일지 양식에서 사업체는 누구의 사업체를 작성하나요?
 - 회사 소속되어 있는 교육대상자는 소속된 사업체명 및 사업체 정보를 작성하며, 개인 교육대상자는 미기입합니다.
- Q. 과제 제출이 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제출하신 과제는 매월 과제제출 마감일 이후 일괄확인하며, 필기시험 대상자 안내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 필기시험

- Q.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교육교재가 있나요?
 - 별도의 파일은 없으나 온라인 교육 시 마지막에 나오는 퀴즈와 요약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Q. 필기시험은 몇 점 이상 받아야 합격인가?
 - 60점 이상 득점하시면 합격이며 **3회까지 재응시** 가능합니다. **시험시간은 1시간**입니다.
- Q. 필기시험까지 통과했어요. 더 조치해야 할 일이 있나요?
 - 사이버연수원(cyedu.kead.or.kr)에서 자격증 출력 후 보관하시면 됩니다. 선임현황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추후 조사 시 쉽게 보고하시려면 사업체 내부에서 결재를 받는 등 자체적으로 선임하는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 제도 관련

- Q.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꼭 선임해야하나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Q. 우리는 장애인근로자가 상시 20명 미만인데, 미선임 사업주의 기준은 뭔가요?
 - ①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 장애인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주 및 ②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업체 중 전년도 4분기 장애인 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원 선임 현황을 조사하며, 선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선임 사업주로 분류되어 상담원 양성교육과정 참석 대상입니다. 다만, 조사 시점에 장애인 근로자 고용 감소 등으로 상시 20명 미만이 되는 경우는 선임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Q. 사업체(사업주) 대표를 직업생활상담원으로 선임 가능한가요?
 - 직업생활상담원은 사업체 소속 근로자만 선임할 수 있으며 **사업체 대표**는 선임 불가합니다.

☐ 기타문의

- 온라인 교육 및 필기시험 문의: 교육연수부(031-728-7034)
- 상담실습 및 과제제출 문의: 근로지원부(031-728-715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양성·배치·역할 및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0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다만, 상시 20명 미만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아.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4항 제2호			
1) 장애인 근로자를 40명 이상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	40	50
2) 장애인 근로자를 30명 이상 39명 이하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	30	30
3) 장애인 근로자를 20명 이상 29명 이하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0	20	2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재활, 특수교육, 심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